

검토의견

- 서울여성플라자부지및시설의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문화·정보교류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「서울여성플라자」 건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「재단법인 서울여성」에 서울여성플라자 시설(부지 및 시설)을 무상 대부하려는 것임.
- 무상 대부하려는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은 여성정책관이 재산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.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려면 지방재정법 제82조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, 동법 제83조(감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)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(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), 동법시행령 제88조(감중재산의 대부)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따라서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을 서울시가 출연한 「재단법인 서울여성」에 무상 대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-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므로 향후 재단법인의 독립 재산이 가능할 경우 유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.
그리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(사용수익허가기간)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된바 본 동의안의 경우에도 3년의 범위 안에서 서 기간을 명시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서울여성플라자부지및시설의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

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, 그리고 문화·정보교류 등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「서울여성플라자」를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전액 출연하는 설립한 「재단법인 서울여성」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여성플라자 부지 및 시설의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한다.

<첨부>

「서울여성플라자」 건립·운영 현황

-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, 사회참여 및 문화·정보교류 등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「서울여성플라자」를 2002.6월 준공하였으며
- 이 시설의 운영주체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『재단법인 서울여성』을 2002.1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
시설현황

- 위 치 : 동작구 대방동 345번지 소재
- 규 모 : 대지 1,966평, 건축연면적 6,758평 (지하3층/지상5층)
- 건립기간 : '99. 11. ~ 2002. 6. ※ 2002. 6. 4(화) 준공식 개최
- 총건설비 : 333억원
- 주요시설 : 여성사 전시관, 여성NGO센터,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정보교육원, 강의실, 어학실, 회의·세미나실 종합상담실, 국제회의장, 아트홀, 연수시설, 수영장 등

추진경과

건립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사업 심사 건립계획 수립 	'96 ~ '97 '97. 1
의견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계 의견수렴 - 서울여성위원회, 여성단체, 건립·운영자문위원회 등 	'97. 3 ~ '98. 9
설계 및 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상설계 공모 공사 착공 	'97.10 ~ '98.11 '99.11.
운영형태 결정 (재단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형태 의견수렴 학술연구용역(시립대) (재)서울여성 설립·운영계획수립 	'00. 8 ~ '01. 5 '00.12 ~ '01. 6 '00. 7. 13
재단 설립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단설립조례 제정·공포 재단설립 허가 및 등기 여성플라자 준공 	'01. 9. 29 '02. 1. '02. 6.

□ 기능 및 위상



□ 『재단법인 서울여성』 개요

- 목 적 :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,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
- 설립형태 : 재단법인 (근거 -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, 서울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치·운영조례)
- 사 무 소 : 동작구 대방동 345-1~4번지, 서울여성플라자
- 자 산 : 여성플라자(부지·시설)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대부(예정)
- 운영재원 : 여성플라자 자체 경영수입에서 조달 원칙(운영비 일부를 市에서 지원)
- 조직인력 : 1차 3부 21명 (2002. 5월 현재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립 일 : 2002. 1. 24일 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 주요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○ 여성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○ 여성 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○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○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○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○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관련 시설 및 사업의 수탁운영 등 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 이사회 및 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사 장(1인) : 서울시 행정1부시장(당연직) ○ 상임이사(1인) :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 대표·총괄운영, 상근직 ○ 이 사(16인) : 당연직(8인: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, 선임직(8인) ○ 감 사(2인) 					
2001회계년도여성정책관소관세입·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<p>가. 총 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정책관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과 여성발전기금결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2억 6백만원에 수납액은 267억 2천만원으로 94.7%의 수납률을 보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,267억 8천 9백만원으로 이중 1,129억 6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,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.4%인 68억 7천 9백만원이며, 불용액은 69억 4천 7백만원으로 불용률은 5.4%로 전년 6.4%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음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말 기금의 규모는 115억 1천만원이었으나, 2001년도 수입액 8억 2천 9백만원과 사업비로 6억 6천 3백만원 등을 지출하여 2001년도말 잔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1.4%가 증가한 116억 7천 6백만원임 ○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예산액 282억 6백만원 대비 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95.1%인 268억 2천 3백만원에 그치고 있음은 세입 추계의 부적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세입예산 추계의 과학화가 요구됨 					
세입결산 현황 (단위 : 백만원)					
예산액 (A)	정수결정액 (B)	수납액 (C)	미수납액	수 납 률 (%)	
				C/A	C/B
28,206	26,823	26,720	103	94.7	99.6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출결산의 경우 이월, 불용액 발생은 2000년도 결산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이를 최소화 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의 철저가 요구됨 					
(다음 페이지에 계속)					